



국가보훈부

국 가 보 훈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보훈단체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

1. 평소 국가보훈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.
2. 관련법령
 - 가.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, 제18조 등
 - 나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, 제13조의3 등
 - 다.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, 제58조의2 등
 - 라.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, 제66조 등
3. 국가보훈부에서는 보훈단체가 단체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회원들의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의를 거쳐 보훈단체에 수익사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.
4. 이에 각 보훈단체가 승인받은 수익사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, 귀 기관의 각 부서와 소속기관에 홍보하여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보훈단체 수익사업 현황 1부. 끝.

국가보훈부장관



수신자 중앙행정기관,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, 공공기관

주무관

박준수

사무관

곽민신

담당관

전결 2026. 3. 9.

김명호

협조자

시행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-372 (2026. 3. 9.)

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, 4층

/ www.mpva.go.kr

전화번호 044-202-5491

팩스번호 044-202-5697

/ lordliest@mpva.go.kr

/ 비공개(7)